

의안번호	2204967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G49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금융투자소득세 소득공제 인상,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 —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,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, 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수는 2025년 2,118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조 9,709억원(연평균 3,94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56조의3제1항)		-7	-8	-8		-23	-8
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(안 제59조의2)	-2,098	-4,816	-4,176	-4,237	-4,299	-19,626	-3,925
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(안 제150조 제3항)	-20	-20	-20			-60	-20
합 계	-2,118	-4,843	-4,204	-4,245	-4,299	-19,709	-3,94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금융투자소득세 안 제50조	기본공제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-	
	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4제2항제1호 가목	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	
	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18제1항 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	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	
	법률 제17757호 제2장의2제6절(제 87조의21 및 제87조의22) 삭제 등	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삭제	
	법률 제17757호 제127조제1항, 제 128조제1항, 제129조, 제5장제1 절제7관(제148조의3) 삭제 등	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삭제	
2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제3호머목1 신설	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	
3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)	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	
4	안 제33조(필요경비 불산입)	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	
5	안 제3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)	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50조(기본공제)	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	
7	안 제56조의3(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)제1항	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	
8	안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제1항	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	
9	안 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)	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	
11	안 제100조(양도차익의 산정)제3항	토지·건물 일괄 취득·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	
12	안 제150조(납세조합의 징수의무)제3항	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	
13	안 제160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) 제4항 신설	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	
14	안 제164조의4제1항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	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	
15	안 제164조의4제2항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, 안 제177조(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)	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금융투자소득세 안 제50조, 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, 법률 제17757호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, 법률 제17757호 제2장의2제6절(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) 삭제 등	×	추계 곤란
2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제3호머목 1 신설	×	추계 곤란
3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	×	추계 곤란
4	안 제33조(필요경비 불산입)	×	추계 곤란
5	안 제3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)	×	추계 곤란
6	안 제50조(기본공제)	×	추계 곤란
7	안 제56조의3(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)제1항	○	
8	안 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제1항	○	
9	안 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)	×	추계 곤란
11	안 제100조(양도차익의 산정)제3항	×	추계 곤란
12	안 제150조(납세조합의 징수의무)제3항	○	
13	안 제160조의3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) 제4항 신설	×	추계 곤란
14	안 제164조의4제1항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	×	추계 곤란
15	안 제164조의4제2항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, 안 제177조(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)	×	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 추계 내역

가.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56조의3제1항)

-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2023년 이후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평균 증가율에 따라 각각 증가한다고 가정
- 2023년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 실적은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- 2022년 전자계산서 발급실적에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면세사업자의 비중을 적용해 세액공제 적용대상 발급실적을 추정하고, 건당 공제액(20원)을 곱해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실적 추계
-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실적에 전자계산서 발급실적 증가율,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수입금액 3억 이하 면세사업자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제도 유지기간 동안 세수효과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6년 7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3억원 감소

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56조의3제1항		-7	-8	-8		-23

나.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59조의2)

- 자녀·손자녀(8세~20세)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인당 10만원씩 확대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종합소득세는 차년도에 신고되나,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개정('25.2 예정)된다는 전제하에 2025년 4월부터 세수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구한 세수효과가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 각각에 대해 제도변화가 없었던 최근 연도(2019~2022)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
- 과세표준 구간별 자녀수별(1명, 2명, 3명 이상)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수에 신청자 1인당 평균 자녀세액공제 확대 금액을 적용하여 추계
 - 추계대상 인원수는 2022년 귀속 기준 국세청의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자녀수별·과세표준 구간별 자료를 활용(근로소득세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포함하되, 동시에 신고하는 중복자는 제외), 1인당 자녀세액공제 확대금액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 반영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2,098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1조 9,626억원 감소

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59조의2	-2,098	-4,816	-4,176	-4,237	-4,299	-19,626

다. 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150조 제3항)

-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종료
- 근로자 납세조합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축소(5→3%)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2023년 조합별 세액공제 신고 수준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-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지급명세서 및 수입금액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납세조합 공제율 축소(5→3%) 및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변화분을 반영하여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2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60억원 감소

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150조 제3항	-20	-20	-20	-	-	-60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강민지	박연서
	김효경	
	신흥철	
	박지원	
	이정훈	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민지	02-6788-4746	min1231@assembly.go.kr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신흥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